

의안번호	제 765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1년 6월 30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
번호

765

제출연월일 : 2021년 6월 30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인용조항에 대한 오기사항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인용 조항 정정(안 제4조)
 - 제4조제3항 단서 중 “제2항제3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정정

3. 의안전문 : 불 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불 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3항 단서 중 “제2항제3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

가. 충청북도의 세입 중 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

나.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,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

2. 일반회계,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

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